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7. 24.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7월 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7월 9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1999년 7월 16일 제65회(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 가. 폐지이유
 -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도로굴착복구공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거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 정부의 공무원상조회 특혜금지 시책과 관련 서울시로부터 시달한 도로굴착복구감독업무개선지침에 따라 구청장 책임하에 도로굴착 감독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를 확보 시행토록 하고 있어 본 조례를 현재까지 적용한 사례가 없고,
 - 또한 본 조례는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사무로서 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대상 사무로 건의됨으로써 폐지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조례폐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조례 제정의 동기가 지방자치법 제59조제3항 및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거 도로굴착 복구공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이 조례 시행이후 한 번도 조례를 적용한 실적이 없었으며 그후 이 제도의 개선지침이 있어 검토결과 본 조례는 법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99년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폐지대상이 되었고 우리구 주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든가 피해상황이 아니며 오히려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폐지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64
----------	----

제출년월일 : 1999. 7. 7.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폐지이유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도로굴착복구공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거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 정부의 공무원상조치 특혜금지 시책과 관련 서울시로부터 시달한 도로굴착복구감독업무 개선지침에 따라 구청장 책임하에 도로굴착 감독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를 확보 시행토록 하고 있어 본 조례를 현재까지 적용한 사례가 없고,
- 또한 본 조례는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사무로서 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대상 사무로 건의됨으로써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폐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 나. 합 의 : 필요 없음.
-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 라. 기 타 : 폐지조례(안) 별첨
- 마. 입법예고 : '99. 6. 4 ~ '99. 6. 24 (20일간) 특기사항 없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